Chapter 3 The Subject of the Civil Rights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I. 권리의 주체

1. 의의

권리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이므로 이러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필요하다. 법질서에 의해 법적 힘이 주어지는 자, 즉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이다. 권리주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주체를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이다. 모든 권리, 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없는 권리나 의무는 없다. 민법학상으로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 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권리능력이 권리는 아니다. 과거의 노예, 노비는 의무만을 부담하며 권리능력이 없었다.

3. 의무능력

권리능력에 대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의무능력이라고 한다. 오늘날 권리 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따라서 권리능력을 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이 권리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Ⅱ. 권리능력자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사단) 및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재단)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권리능력자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권리능력자는 인격자라고도 하는데, 권리능력자인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자연인이라 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을 法인이라 한다. 민법상 인이라고 하면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많으나 자연인만을 가리켜 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1. 자연인

가. 의의

모든 사람이 성, 년령, 계급의 구별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자가 된다. 이러한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기까지에는 오랜시간이 걸렸다.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3조는 모든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나. 연혁

고대의 대가족제도하에서는 家長만이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졌으며, 처나 기타 가족은 가장의 권력에 복종하며 권리능력이 제한되었다. 중세의 봉건사회에서는 신분, 직업, 성별에 의해 권리능력이 차별화되었다. 노예가 유지되었던 사회에서 노예는 법적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고려시대 이후에 率居奴婢는 경국대전의 戶典에 있는 牛馬의 매매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우마와 같이 매매되어 권리능력이 없었다. 外居奴婢는 주인과는 독립된 家戶와 家計를 유지하면서 토지와 가옥과 노비를소유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제한능력자로 볼 수 있다.

2. 법인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주어져 있는 사단과 재단이 법인이다. 근대 사법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하여 권리주체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따라 사단이나 재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Ⅲ. 능력의 종류

1.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민법상 능력이라고 하면 이는 행위능력을 의미하는데(제5조 이하, 제112조, 제179조) 이는 획일적으로 판단된다. 자연인의 경우에 행위능력은 제한능력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법인에서 행위능력은 대표기관의 문제로 된다.

2.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아나 심한 정신병자 등에게는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민법규정에는 없지만 의사능력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판례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이다"라고(대판 2006.9.22. 2006다29358) 한다. 우리나라도 古來로 광질병자나 백치자등 정신병자가 스스로 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며,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해준관례가 있었다(관습조사보고서 19).

3.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불법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법 영역에서는 책임능력 즉 불법행위능력이 필요하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의사능력과 같이 개개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판례는 "가해당시 연령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3년 3개월이 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

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대판 1969.7.8. 68다2406) 한다.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 또는 채부물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는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법인에서는 책임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나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Ⅳ. 강행규정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개인의 의사로서 그 적용을 물리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103조, 105조)

제2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I. 권리능력의 의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원칙은 근대법이 확립한 대원칙이다. 우리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과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이지만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근대법이 추상적 인간(person)을 중심으로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였지만 현대법에서는 구체적 인간(mensch)을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을 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면에서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불평등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

가. 출생의 시점

민법은 출생의 시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부노출설은 출생의 완료 즉 태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드러난 때에 출생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진통설은 산모가 분만에 앞서 주기적인 복통이 있을 때를 출생으로 보는 견해이다. 진통은 태어가 모체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한다. 형법학에서는 진통설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일부노출설은 태어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드러난 때에 출생이 있다고보는 견해이다. 독립호흡설은 태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기의 폐로 독립하여호흡하게 된 때 즉 첫울음이 있는 때에 출생으로 보는 견해이다.

나. 사람이 잠시라도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다.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고적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로 권리능력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된다.

[용어정리]

보고적 신고는 이미 법률효과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이다. 창설적 신고는 신고로 인하여 새로운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 입양, 인지, 협의이혼 신고 등이다.

2. 태아의 권리능력

가.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의 권리능력을 출생한 때로부터 시작한다면 즉 태아의 권리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태아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며, 출생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태아보호의 필요성과 제한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입법례가 있다.

나. 태아의 보호범위

1) 입법주의

- 가)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이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태아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종래의 로마법과 현행 스위스 민법이 취하고 있다.
- 나) 개별적 보호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적용범위가 명확하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 못한다. 독일 민법 제1923조, 프랑스 민법 제725조, 우리 민법이 취하는 태도이다.
 - 2)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해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제752조)과 태아 자신에 대한 출생전에 입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다만, 태아인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인한, 父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의 문제이다. 판례는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대판 1993.4.27. 93다4663).

나) 태아의 상속능력

민법은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의제하고 있다 (제1000조 3항). 대습상속(제1001조)과 유류분권(1118조)에 대해서도 다수설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다)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제1073조) 태아는 수유능력

이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유증의 경우에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64조, 제1000조 3항). 유증자의 사망시까지 포태되어 있으면 되고, 유언시에 포태될 필요는 없다.

라) 기타문제

(1)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가 死因贈與이고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다(제562조). 다수설(고상룡, 곽윤직, 김용한, 김증한,장경학)은 유증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사인증여에서는 유증이 준용되므로, 사인증여에도 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수설(김주수, 이영준, 이호정)은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개별규정들이 태아측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는 경우임을 비추어 계약인 사인증여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한다. 판례는 소수설인 부정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대판 1982.2.9, 81다534) 한다.

(2) 인지청구권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그 者를 자기의 子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제855조). 父는 태아를 인지하지만(제858조), 모에게는 태아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가 출생한 후에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제기 가능하다.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 인지청구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채택하지 않았다. 해제조건설의 입장은 태아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母 등을 통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나(곽윤직, 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판례는 갑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을이 갑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갑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병, 정을 출산한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갑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 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병, 정의 인지청구를 인정"하였다(서울가법 2011.6.22. 2009드합13538)

(3)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대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AIH(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와 제3자인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의 경우가 있다.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된다. 그러나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서울가판 2011.6.22. 2009드합13538)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들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를 어떻게 이론구성을 할 것인가 또는 태아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가)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태아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 사항의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死産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로 다수설의 입장이다. 불법행위, 상속 개시 등 문제가 생긴 때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되, 사산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태아보호에 철저하고 태아가 대부분 출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나)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태아가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의 취득하되, 그 효과가 불법행위, 상속 개시 등 사건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소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견해는 제3자 또는 상대방 등 거래안전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출생 전에는 태아를 위한 법정대리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 판례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고(대판 1976.9.14, 76다1365) 한다.

*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비교

구분	태아 중의 권리능력	출생의 경우	사산의 경우	권리의 행사	장,단점
정지 조건설 (소수설 및 판 례)	태아인 동안 권리능 력 없음. 태아존재를 고려치 않고 법률관 계(상속) 처리	권리능력의 취득 은 출생전의 출 생전의 사건발생 시점까지 소급하 여 처리	태아인 동안에 처리된 법률관 계는 변경이 없 다.	출생전에는 권리행사를 문제로 할 필요가 없다.	장점:태아 보호 미흡 단점:태아 사산 시 상대방 또 는 제3자 손해 없음
해제 조건설 (다 수 설)	태아인 동안에도 사 건발생시점부터 제한 적 권리능력 인정. 태 아도 출생자와 같이 법률관계(상속) 처리	태아인 동안에 처리된 법률관계 는 변경없음	권리능력은 사 건발생시까지 소급소멸한다. 태아동안의 법 률관계 다시 정 리 요한다	태아인 동안 에도 권리행 사를 위해 법정대리 존 재 인정	장점:태아 보호 가 두터움 단점:상대방 또 는 제3자의 불 측의 손해가능

Ⅲ.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가. 사망의 결정시기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사설이 나왔으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의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동법 제21조 제2항).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1항).

나. 사망의 효과

사망으로 인하여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사망의 효과로 상속의 개시, 유언의 효력 발생, 혼인관계의 종료, 잔존배우자의 재혼, 사망보험금청구권(상법 제727조), 연금청 구권 등이 발생한다.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가. 동시사망의 추정

1) 의의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는 어느 때를 사망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망의 시기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민법 제30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추정규정 이므로 추후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동일 위난이 아닌 경우에도 통설은 동시사망으로 추정하여 제30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2) 동시사망의 추정에 대한 입법례로는 첫째, 구체적 생존추정주의로 이는 동시사망자의 연령, 성별 등에 의하여 체력이 강한 자가 최후까지 생존했다고 보고 이를 사망의 선후를 추정하는 주의로서, 로마법과 현 프랑스법이 채택하였다. 둘째, 추상적 생존주의로 이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장의 순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연소자가최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1925년에 영국법이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셋째, 동시사망추정주의로 이는 일률적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의 실종법,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의 민법이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

3) 동시사망 추정의 효과

동시사망의 추정이 되는 자 상호간에는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나. 認定死亡

1)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 즉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관공서가 조사하여 사망한 것을 증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이는 항공기 추락, 선박 침

몰, 전쟁, 지진, 갱도 폭발, 산사태, 화재, 홍수 등 사망이 확실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이다.

2)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보통의 기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반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수 있다.

다. 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이에 대하여는 부재와 실종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된다(국적법 제18조, 외국인토지법 제6조).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하여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범위 내에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능력을 가진다(평등주의).

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

가. 의의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권리능력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는 권리능력의 범위의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례로는 평등주의와 상호주의가 있는데, 전자는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본국이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권리능력의 제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절대적으로 제한(권리능력 부정)되는 경우로는 한국선박과 한국항 공기의 소유권, 공증인이 되는 권리, 導船士가 되는 권리 등이 있고, 상호주의에 의하여 제 한되는 경우로는 토지 취득(외국인토지법), 지적재산권, 외국 저작물보호 등이 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는 때 신고, 허가 등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다. 국적상실시 3년간 보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러한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 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